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주간 입법 동향

Vol. 72(2022. 7. 25 ~ 7. 29)

DR & AJU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주요 법안 동향

법안 종류	키워드	주요 법안	주요 내용
발의안	기업금융	①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가 직접 은행들의 예대금리차의 적절성과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은행들에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조세	②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현행 0.23%(농어촌특별세 포함)인 증권거래세를 내년에 0.1%로, 2024년에 0.05%, 2025년에는 완전히 폐지하도록 함.
국회 계류안	기업송무	③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 매장에서 이뤄지는 통신판매의 경우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공포 법령	기업금융	④ **의료기기법 시행령**	수출용 의료기기만을 제조하는 업자를 제외한 모든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입법/ 행정예고	기업금융	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연보전권역 내에 있는 폐수 배출 없는 공장 규모 규제를 현 1000㎡에서 2000㎡로 완화 및 국내 복귀 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 · 증설과 소규모 공장(500㎡ 미만)의 관내 이전시 공장 변경 등도 허용하도록 함.

1. 발의

*각 법률안 및 검토보고서 확인을 위해서는, 법률안 밑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1	 윤두현 (국민의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한국은행의 계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회사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에 기준금리를 반영하는 속도 차이에 따른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소비자의 금융 부담은 증가되는 반면 금융회사에는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은행의 예금금리,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1개월마다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은행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T2A0M7I2I0V1X1C1Z1S2P5N5L4Z1	헤럴드경제 22.07.22. 금리 인상기 '은행 떼돈' 막는다… 與 "금융위, 금리 적절성 판단" 법안 발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722000242	22.07.20. 제안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2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 현행법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또는 지분이 유상 양도될 때 양도가액에 대하여 0.35%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하게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에서 종목별로 정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된 「소득세법」(2020. 12. 29. 개정, 2023. 1. 1. 시행)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를 신설하여 2023년부터 주식, 채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예정임. 이는 같은 증권의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되 과세방식의 전환으로 세수가 급격하게 영향을 받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함. 나.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과세방식이 전환됨에 따른 세수 증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 후 폐지함(안 부칙 제2조). 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I2U0U6W3B0H1T8F0P0W5N4P2C4L3	국민일보 22.07.21. 尹정부 '양도세 폐지' 방침에… 野 '거래세 폐지'로 맞불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55973&code=11151200&cp=nv	22.07.20. 제안

2. 국회 계류안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3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현재 제5차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2019~2023년)이 시행 중)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중소유통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각종 규제를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지나치게 길게 설정되어 급변하는 유통산업환경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온라인유통 등 새로운 형태의 소매업이 급성장하여 유통산업의 생태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에도 과거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규제가 불합리하게 존속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준대규모점포 중에서도 사실상 중소자영업자에 해당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해서도 다른 준대규모점포와 동일한 규제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고,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 등에 이미 소매업에서도 보편화되어 있는 온라인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역차별에 해당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그 전문성과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유통산업 실태조사를 통계작성지정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연구기관 또는 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유통산업 관련 통계자료가 부족하여 수행기관을 민간기관까지 확대함으로써 실태조사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단축하고, 대규모점포에 대한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며, 상권영향평가의 작성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도록 하고, 민간기관에도 유통산업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헤럴드경제 22.07.24. '대형마트 규제 완화' 급물살에 소상공인 반발…결정권은 '국회'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07182137005	21.06.18. 제안 21.09.07. 상임위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21.09.08. 소위 상정 21.11.23. 소위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 주요내용 가.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중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등이 점포 개업에 드는 임차료, 공사비 및 설비비 등 총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점포만이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도록 개정함(안 제2조제4호라목 신설). 나.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기본계획의 내용에 통신판매업자와 기존 업체들의 상생협력 방안을 포함할 것을 명시함(안 제5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제8호). 다. 유통산업 실태조사를 유통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6조제5항). 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매장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2조의2제5항 신설). 마. 유통산업 실태조사를 유통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6조제5항). 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A1C0I5T2M5X1C5O4S2H0Q5H6Q6V9		

3. 공포 법령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일자
4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법 시행령	■ 의료기기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사망 또는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에게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18319호, 2021. 7. 20. 공포, 2022. 7. 21. 시행)됨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대상을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로 정하는 한편,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를 의료기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입은 환자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이나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 또는 공제로 정하고, 보험금액을 사망·부상·후유장해 등의 경우로 구분하여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인공무릎관절, 치과용임플란트 등 인체에 삽입되어 30일 이상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의료기기 출처:https://www.law.go.kr/법령/의료기기법시행령	매일경제 22.07.20. 인체이식 의료기기 보험 의무 개정·공포…사망 시 1억 5천만원 https://www.mk.co.kr/news/it/view/2022/07/638742/)	22.07.19. 일부개정 22.07.21. 시행

4. 입법/행정 예고 법령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예고기간
5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신사업분야 진출 등 사업재편 활성화 및 투자 지원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업무와 권한을 위탁받은 신탁회사가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복귀기업이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안에서 공장을 신 · 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국내기업의 복귀를 지원하는 한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 입주가능 시설을 일부 금지시설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통해 입주가능 시설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업무와 권한을 위탁받은 신탁회사가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제6항제12호나목 신설)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수도권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허용하는 기업에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을 추가함. (안 제26조제8호) 다.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지원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일부 금지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의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입주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식으로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입주허용 대상을 변경함. (안 제36조의4제2항) 출처: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9153?pageIndex=2	조선비즈 22.07.20. 국내 복귀기업,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 공장 신·증설 가능해진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2/07/20/7UBRMI7VYJH3NJASVL76ETUV5A/	22.07.21. ~ 22.09.03.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기사

[경향신문][기사] 6개월 동안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서 산재발생 117건, 검찰 기소 아직 1건(2022.07.27.)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07271539001

주요내용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6개월간 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모두 117건이며 124명이 사망했고, 29명이 유독물질에 중독됐음. 고용노동부는 이중 14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16명이 유독물질에 중독된 두성산업만을 기소함. 대흥알앤티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중대재해법 적용 1호'로 잘 알려진 삼표산업을 비롯한 12건은 아직 수사 중임.

검찰은 지난달 27일 13명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대흥알앤티 법인과 경영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법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국소배기장치가 기능을 제대로 못했지만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을 청취했고,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 중이었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임.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위험성 평가와 같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형식적으로 갖추어진 경우와 실질적으로 작동해 개선조치를 한 경우는 구별돼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의무 현장 점검을 얼마나 자주했으며, 그에 따른 개선조치는 이행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함.

[연합뉴스][기사]"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장기간 중단시키는 노동부 명령 개선돼야"(2022.07.27.)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7046500003?input=1195m

주요내용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장의 작업을 감독관 재량으로 한 달 이상 중단시키는 고용노동부의 명령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 작업중지 명령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 보고서를 27일 발표하면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 지청의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작업 중지 명령으로 기업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이후 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1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분석함. 경총은 이와 관련해 ▲ 부분 작업중지 명령 요건과 절차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 ▲ 작업 중지 기간 장기화 유발요인인 해제심의위원회 절차 삭제 ▲ 작업 중지 명령에 대한 실태 점검 등을 제안함.

[중앙일보][기사]이영, 중대재해법 5민미만 적용에 신중…"점진적 도입"(2022.07.26.) 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9891

주요내용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국민의힘 임의자 의원의 질의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침. 이 장관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들도 기본권을 받아야 한다는 큰 틀에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히며, 5인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이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라고 말함. 또한, 코로나19 이후의 3중고 상황에서 해당 입법이 시행된다면 그 충격을 시장은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먼저 이 부분을 공론화해서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연합뉴스][기사]중대재해법 시행후 건설현장 사망자 ↓…1분기 55명→2분기 44명(2022.07.22.)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1173100003?input=1195m

주요내용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의 대형·공공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총 4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22일 밝혔으며, 이는 직전인 1분기(55명)와 비교하면 20%(11명) 줄어든 것.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대형 건설사의 9개 현장에서도 9명의 사망자가 나왔음. 이 역시 1분기(14명)보다 36%(5명), 지난해 2분기(20명)와 비교해선 55%(11명) 각각 감소한 것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담당 변호사 및 전문인력

입법전략센터



차동언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0
E : decha@draju.com



박민재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17
E : parkmj@draju.com



이승철
고문

T : 02-3016-8706
E : sclee@draju.com

기업금융그룹



김인진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61
E : kij@draju.com

기업금융그룹



정경록
경영총괄변호사

T : 02-563-2900
E : krjeong@draju.com

조세그룹



이규철
대표변호사

T : 02-3016-5335
E : kclee@draju.com

기업송무그룹



김수형
파트너변호사

T : 02-563-2900
E : shkim@draju.com

중대재해자문그룹



김영규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3
E : ykkim2@draju.com